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67

제출연월일: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 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선박안전법」의 개정(안 제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선원법」의 개정(안 제3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 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안 제5조)
  - 1)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 2)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

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

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시설 안전점검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 상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을 폐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을 조정함.

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7조)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 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제2조(「선박안전법」의 개정)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89조제2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조(「선원법」의 개정)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4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벌칙) 제3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2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만,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 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을 "5 00만원"으로 한다.

제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심층 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호 중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를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박안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선박안전법」 제85조제7호

-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선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선원법」 제177조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	<u>&lt;삭 제&gt;</u>
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	
보안료를 징수한 자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
	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
	보안료를 징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	<u>&lt;삭 제&gt;</u>
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u>한 자</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삭 제	제89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
	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u>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7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u>&lt;삭 제&gt;</u>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79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① 조합의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①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	
·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	
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	
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	
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	
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	
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	
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	
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	
혔을 때에는 <u>1년 이상 10년 이</u>	<u>10년</u> 이하의 징역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벌금</u> 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7조(벌칙) 제39조제1항제2호의2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벌금에 처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
<u>1.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u>	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u>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u>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2.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	금에 처한다.
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9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제39조(과태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2</u> 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만, 제37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8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_		~ .
(3)	(생	략)
$\langle \mathbf{O} \rangle$	( / X	4)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	<u>500</u> 만원 -
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에 <u>따른 자료제출명령</u>	3 <u>따른</u>
<u>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u> 출입	
·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법률명/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 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 범죄화
2	선박안전법 제85조, 제8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범죄화
3	선원법 제177조, 제179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범죄화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6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조합의 임원 및 청산인 등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10년 이 하의 징역(하한 삭제)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형량 조정
5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ul> <li>제18조 제7항에 따른 조시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함.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하는 先행정제재-後형벌 부과 형태로 변경</li> <li>제18조 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범죄화</li> <li>*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li> </ul>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설 안전점검 의무 등을 미이행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종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형 벌 완화를 위해 징역형을 폐지함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범죄화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법률명/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선박안전법 제85조, 제89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선원법 제177조, 제179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6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의안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상세 사유

O 개정대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벌칙부과는 개정 전에도 이미 시행 하던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음 (7개 법률 공통)

## Ⅲ. 부대의견

O 이번 개정은 형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형벌을 비범죄화(과태료 전환) 또는 형량 조정, 先행정제재-後형벌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기술적 추계는 불가)

# Ⅳ. 작성자

#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임민주	-	윤두한	이시원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민주	044-200-5780	imminju@korea.kr

## 2. 선박안전법

## O 성명

사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김재윤	최원석	남창섭	최성용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재윤	044-200-5833	bhjy21@korea.kr

## 3. 선원법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문항	한성민	이민석	이시원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문항	044-200-5768	dlansgkd76@korea.kr

#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O 성명

사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정가훈	김선하	임지현	이시원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가훈	044-200-5717	glegoo159@korea.kr

# 5.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조헌주	이상윤	황준성	홍래형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현주	044-200-5430	hjcho20@korea.kr

#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O 성명

사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박은화	박상배	임지현	이시원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화	044-200-5278	spider@korea.kr

##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소윤	임진영	강미숙	김용태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소윤	044-200-5249	orange007@korea.kr